

인천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19가단209627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담

담당변호사 김동욱, 이중재

원고보조참가인B

피고C

소송대리인 변호사 현창수

변론 종결 2021. 6. 3.

판결 선고 2021. 7. 8.

주 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허가한다.
2. 가. 피고와 망 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4.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68,707,2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68,707,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 및 피고와 망 D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8. 4. 19. 체결한 매매계약을

55,160,572원 및 그중 13,616,734원에 대하여는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7.99%의, 7,384,155원에 대하여는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1.39%의, 17,790,911원에 대하여는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34%의, 16,179,337원에 대하여는 2018. 8.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3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0.부터 2017. 11. 20.까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아래와 같이 할부금융 또는 금융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1	E	할부금융	2017. 2. 10.	2020. 1. 27.	16,800,000원	연 4.99%	연 7.99%
2	F	금융리스	2017. 8. 31.	2022. 8. 25.	128,000,000원	연 8.39%	연 11.39%
3	G	할부금융	2017. 10. 18.	2020. 10. 26.	18,690,000원	연 7.34%	연 10.34%
4	H	할부금융	2017. 11. 20.	2020. 11. 25.	16,765,000원	연 7.34%	연 10.34%

나. 망인은 2018. 4. 2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8. 4. 19. 매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망인은 2018. 4. 23. 사망하였고, 망인의 상속인들인 B, I, J은 인천가정법원 2018느단10747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8. 7. 17.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았다. 라. 이후 원고는 2020. 6. 9. 망인의 상속인들로부터 16,996,472원을 지급받아 순번 2번의 금융리스 채권 중 2018. 8. 15.부터 2020. 6. 8.까지의 이자와 원금 일부에 충당하였고, 2020. 6. 15. 무렵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망인에 대한 채권은 별지 '피보전채권 내역' 기재와 같다.

마. 1)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K 주식회사, 채권최고액 5억 4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2018. 4. 19.를 기준으로 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는 4억 2,000만 원이다.

2) L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인 2018. 5.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18. 5. 2.부터 2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가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K 주식회사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원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 망인의 상속재산이 되어 단순승인으로 의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를 위하여 보조참가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므로, 위 보조참가신청이 적법한지 본다.

특정 소송사건에서 당사자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는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다26924 판결 등 참조).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수익자인 피고와 채권자인 원고 사이에 상대적으로 미칠 뿐이어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패소하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이 곧바로 망인의 상속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나, 이 사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와 망인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원고보조참가인은 망인의 상속인으로서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원고보조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판결 결과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보조참가신청은 적법하므로 허가하기로 한다.

3.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망인에 대하여 가지는 할부금융 또는 금융리스계약에 따른 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채권으로,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망인의 무자력 여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4. 19.경 망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 내역은 아래와 같은바, 이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가 제10, 11, 15,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M, N 주식회사, 주식회사 O, 주식회사 P, 주식회사 Q, R 주식회사, K 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결과, 세무법인 S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적극재산]

1	이 사건 부동산	750,000,000원
2	상주시 T 임야	12,575,000원
3	골프 자동차	6,245,672원
4	이륜자동차 3대	39,200,000원
5	세무법인 S 주식	20,000,000원
6	퇴직금	31,170,030원
7	U협회 퇴회금	9,945,000원
8	예금	7,964,948원
9	해지환급금	30,073,572원
합계	907,174,222원	

○ 망인은 세무법인 S의 사원으로서 위 세무법인의 주식 2,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경우 그 시가는 객관적 교환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격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나, 그러한 거래사례가 없는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을 고려하되 거래 당시 당해 비상장법인 및 거래당사자의 상황, 당해 업종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의 세무법인 S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위 세무법인에 2,000만 원을 출자하고 위 주식 2,000주를 보유한 사실, 위 주식의 비상장주식으로 그 액면가액이 1주당 10,000원인 사실, 위 세무법인은 사원이 탈퇴할 경우 그 사원이 운영하던 해당 지사의

이익잉여금을 모두 배당하여 이익잉여금을 0으로 만든 후 탈퇴하는 사원에게 출자금을 반환하거나 해당 사원의 지분을 인수하는 다른 사원에게 양도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하여 왔고, 망인의 사망 후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망인의 출자금 2,0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주식에 관한 거래사례나 그 밖에 위 주식의 시가가 액면가액을 초과한다는 뚜렷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위 주식의 시가는 액면가액인 2,000만 원(= 2,000주 × 10,000원)이었다고 추인함이 타당하다.

○ 세무법인 S은 당초 망인에 대한 퇴직금을 61,552,471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이를 31,170,030원으로 정정한 후 2018. 11. 16. 망인의 상속인에게 지급하였다.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이 받은 상속한정승인 심판결정문에 기재된 바에 따라 61,552,471원을 퇴직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 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므로(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21882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상속인들이 한정승인신고 당시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한 적극재산의 금액에 확정적인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소극재산]

1	원고	68,048,842원
2	K은행(대출금)	99,393,452원
3	세무법인 S(가지금)	420,000,000원
4	V(통신요금)	43,000,000원
5	K은행(신용카드대금)	234,180원
6	W카드(신용카드대금)	389,380원
7	X카드(신용카드대금)	124,370원
8	Y카드(신용카드대금)	868,362원
합계	103,600원	
합계	632,162,186원	

○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리금과 유예금 합계 203,513,99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원리금을 연체 없이 납부하였고, 원고가 망인의 사망 후인 2018. 8. 15. 이 사건 약정을 해지하여 같은 날을 기준으로 한 원고에 대한 망인의 채무는 68,048,842원(= 13,659,167원 + 20,272,425원 + 17,867,508원 + 16,249,742원)이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채무자의 소극재산은 실질적으로 변제 의무를 지는 채무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 점(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다2564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망인의 소극재산은 68,048,842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단순히 이 사건 약정이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던 2018. 4. 19.을 기준으로 향후 이행하였어야 할 리스 관련 채권액 전부를 망인의 소극재산으로 볼 수는 없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망인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피고가 망인과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점, 피고는 망인이 피고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대물변제 하였다고 주장하나 망인이 피고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의 액수나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갑가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8. 4. 18. 피고에게 '사실혼 파기에 대한 위자료로 이 사건 아파트를 주기로 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는바,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자신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망인이 자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 것으로,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데(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사해행위 취소 범위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3다19572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원금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5. 또는 2020. 6.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위 법리에 따라 원금과 이에 대하여 변론종결일인 2021. 6.

3.까지의 지연손해금만 인정함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피보전채권을 산정하면 68,707,279원¹⁾이 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2)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이 사건 부동산에 L 앞으로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원물반환 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갑가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2020. 6.경 시세는 7억 5,00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5억 400만 원, 2018. 4. 19. 기준으로 한 실제 피담보채무는 4억 2,000만 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6. 3.을 기준으로 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68,707,279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이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내에 있음이 계산상 명백하다. 가액배상액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액인 68,707,279원이 된다.

3)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68,707,279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8,707,27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자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손화정

별지

1) $[13,616,734\text{원} + (13,616,734\text{원} \times 1,024\text{일}/365\text{일} \times 7.99\%)] + [7,384,155\text{원} + (7,384,155\text{원} \times 360\text{일}/365\text{일} \times 11.39\%)] + [17,790,911\text{원} + (17,790,911\text{원} \times 1,024\text{일}/365\text{일} \times 10.34\%)] + [16,179,337\text{원} + (16,179,337\text{원} \times 1,024\text{일}/365\text{일} \times 10.34\%)]$